

## 2. 貸金業 導入의 實效性 論議

### ○ (背景·趣旨)

- 정부는 최근 金融實名制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하자금의 陽性化 方案 으로 금융산업 개편 차원에서 貸金業 도입 검토를 발표하였음
- 貸金業의 허용은 高利貸과 가혹한 채권회수 등 私債市場의 逆機能을 최소화하고, 기존 제도금융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서민들의 急錢이나 영세사업자의 不渡資金 유통 등 私金融의 順機能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임

### ○ (問題點)

- 貸金業의導入은 금융제도의 다양화·효율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, 현실적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  - 貸金業은 고금리의 소비자 금융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자금으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없음
  - 貸金業을 통한 高收益 기회의 제공은 중소기업을 제조업보다 손쉬운 高利貸 金業으로 전환시켜 생산자금을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출시킬 우려가 있음
  - 기존 제도금융기관의 기반을 잠식하여 자금의 흐름을 歪曲시키고, 금융시장의 二元化를 초래하는 등 금융산업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

### ○ (推進 方案)

-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金利自由化 등 기존 제도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기능 보완으로 私金融에 대한 公金融의 경쟁력 강화가 선결되어야 함
- 신용사회 정착 등 금융제도 전반의 선진화에 맞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

### ○ 貸金業 導入 檢討의 背景

- 수차례에 걸친 정부당국의 私金融 陽性化 조치에도 불구하고 私債는 지하에 은닉하여 脱稅, 高利貸, 강압적인 채권 회수 등 각종 불법행위로 사회·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
  - 1972년의 '8·3조치', 1982년의 '李·張 사건'에 따른 사채시장 정비, 1993년의 금융실명제 등에도 불구하고 가계수표·어음·상품권·카드 할인, 일수, 월변 등 사채놀이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
  -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93년말 현재 GNP의 22%인 58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(조세연구원),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총운전자금 조달액 중 사채시장 의존도가 20-25% 가량되는 것으로 추정됨 (산업은행)
- 지하자금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金融實名制를 보완하고 영세 자금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95년 하반기에 貸金業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.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음
  - 貸金業者の 자기자본 및 개인차입금을 財源으로 하여 貸出 업무를 허용 (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예금수신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은 금지)
  - 음성자금의 양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금업을 원하는 사채업자에 대해

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주고, 협약제가 아닌 등록제로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

- 현행 「이자제한법」상 금리상한이 25%로 되어 있으나 貸金業者에게는 금리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금리 유인을 제공
- 미등록자의 사채업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, 대금업의 대출 조건 공시, 강압에 의한 채권 회수 금지 등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

### ○ 外國의事例

- 日本은 1983년 貸金業法을 제정해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음
  - 「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등 2개의 법률로 대금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장성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
  - 대출 규모는 1993년 3월말 현재 93조 엔으로 제도권 은행 전체의 대출 규모인 472조 엔의 19.7%를 차지하고 있음
- 美國은 「금융회사(Finance Company)」에서 신용도가 낮은 영세기업 및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을 제공하고 있음
  - 연방법인 「소비자신용보호법」을 통해 규제를 하고 있으며, 각 주별로 「이자제한법」 등에 의한 소비자 보호 규정이 있음
  - 「금융회사」들은 예금 수신기능이 없으며 은행차입, 상업어음 및 채권발행에 의해 자금 조달
- 臺灣은 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없으며 1989년 금융개혁 이후 사채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현재는 전무한 실정임

### ○ 貸金業導入의期待效果

- 貸金業의 허용은 기존 제도금융에 의해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서민들의 急錢이나 영세사업자의 不渡資金 융통 등 소액 대출을 위한 금융기회의 확대, 금융제도의 다양화, 금융서비스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음
  - 私金融을 제도화함으로써 가혹한 高金利와, 불법적인 채권회수 등으로부터 영세 借入者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
  - 私債의 양성화는 貸金業 利子 지급에 대한 세제상 비용 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實效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함
- 私金融 陽性化는 지하경제의 축소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고 세수 형평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임

### ○ 貸金業制度化的實效性

- 貸金業 허용에도 불구하고 자금원의 노출을 꺼리는 지하자금의 속성상 대폭적인 양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움
  - 만성적인 자금의 超過需要를 보이고 있는 우리의 금융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음성자금이 세금징수를 비롯한 각종 규제와 간섭을 받는 제도권으로 들

어오지 않고도 지하경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실정임

- 貸金業의 도입은 우리 금융제도의 다양화·효율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, 현실적인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  - 貸金業을 통한 高收益 기회의 제공은 중소기업들을 제조업보다 순수운 貸金業으로 전환시켜 생산자금을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출시킬 가능성이 큼
  - 상호신용금고 등 각종 規制를 받고 있는 기존 중소금융기관의 업무 기반을 잠식하여 금융시장의 二元化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
  - 貸金業은 高金利의 소비자 금융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자금으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없음
  - 부실 채권 발생 時 대출금 회수를 위한 강제력 동원의 우려가 높음. 일본의 경우 봉급생활자를 상대로 한 「사라킨(サラ金: 샐러리맨 금융)」의 번성에 따라 가출, 일가족 집단 자살 등 심각한 사회·경제적 문제를 초래하였음
- 貸金業의 도입은 실질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 수 없음
  - 현행 「利子制限法」상 금리 상한이 25%로 되어 있으나 속칭 '달러 이자'의 경우 하루 1%, 연율로는 300%가 넘는 실정임
  -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경제 여건이 훨씬 좋았던 1983년 貸金業 금리 상한이 연율 109.5%였으며 그후 단계적으로 하락하여 40.0%로 낮아지는 데 10년이 걸렸음

### ○ 私金融 陽性化 推進 方案

- 사회·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 금융기관의 기능 보완을 통해 私債市場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함
  - 私金融의 逆機能은 공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데서 파생하는 것으로 公金融 기능의 확충이 없이는 私債市場을 균절할 수 없음
  - 기존 제도금융기관의 활동을 규제해 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금융 중개 기관을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歪曲을 야기시켜 금융시장의 二元化를 초래할 가능성성이 있음
  - 私金融을 양성화를 위해서는 金利自由化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할 것임
- 貸金業의 도입은 금리자유화, 신용사회 정착 등 금융제도 전반의 선진화에 맞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
  - 상호신용금고, 새마을금고 등 기존 제도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의 완화로 庶民 金融을 확충하여야 함
  - 金融自律化 등 기존 公金融 시장에서의 제도 개편이 완료된 후 제도권내에서 소화시킬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貸金業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

(이 한식)